2022년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5. 23.(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송수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8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19건(안건번호 제2022-42083호~4410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42083호(순번 1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 중인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임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정보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합법 시장 및 저작물의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시정권고의 이행 확보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42084호~42085호(순번 2번~3번)은 ♠♠♠♠ 블로그와 ◈◈◈ 카페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모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안건번호 제2022-42086호~44101호(순번 4번~2019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00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66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15919호~1658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에 접속할 수 있는 66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8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인 정보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건 회의록은 비식별 처리 후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93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일썬' 등 5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007건의 복제

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6쪽 이하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 등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1건임.

'♧♧ ♧♧ ♧♧ ♧♧♧ ♧♧♧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작성자가 접속을 확인한 스트리밍 사이트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접속되는 링크 정보의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게시글 내 사이트 설명에 링크를 게시하였고, 클릭 시 바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됨. 링크되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는 총 3개로,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로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공중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로서 '저작권 침해 정보'임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정보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합법 시장 및 저작물의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시정권고의 이행을 확보하여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정보를 제

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A 위원: 여러 번 논의되었던 안건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함.

- B, C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및 ◈◈◈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총 2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 블로그와 ◈◈◈ 카페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불법복제물로, 모두 한 회차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2번 내지 3번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제공중인 영상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위원 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 내지 3번은 원안대로 시정권고 가결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다음으로 순번 4번부터 순번 2019번까지 총 3,004건의 모니터링 안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15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임. 4월에 개봉한 최신 영화로, 320 캐시에 판매중임.
  (출판물 '달빛조각사'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88번은 웹하드에서 3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출판물 '달빛조각사'임. 43~45권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음악 '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45번은 카페에서 제공중인 음악저작물 '난'임. 원저작물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해당 3건을 포함한 총 3,004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부터 순번 2019번까지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2083호~42085호(순번 1번~3번)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로 가결하고, 그 외 안건번호 제2022-42086호~44101호(순번 4번~201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8쪽부터 1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5919호~16587호(순번 1번~669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3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